

2026년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창업·재창업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30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생태계 기반 조성
 -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창업지원금, 교육, 멘토링, 자원연계 등 지원
- **사업대상:**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기업가의 자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팀(대표 포함 2인 이상 구성)
- **선정규모:** 총 500팀 내외
- **추진절차**

창업팀 모집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6.3.30.(월)	▶	사업 신청 (창업팀) '26.3.30.(월) ~ '26.4.17.(금) 17:00	▶	우선순위 창업팀 선정 (창업지원기관) '26. 4.20.(월) ~ 5.8.(금) ①서류심사 '26.4.20.(월)~4.23.(목) ②심층면접 '26.4.24.(금)~4.30.(목) ③대면심사 '26.5.1.(금)~5.8.(금)
▼				
사업 수행 (창업팀) 협약체결일~'26.12월	▶	선정공고 및 협약체결 (창업지원기관-창업팀) '26.5.18.(월)	▶	창업팀 최종확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6.5.13.(수) ~ 5.14.(목)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 창업팀 선정 관련 공지사항 (서류심사결과, 심층면접·대면심사 안내 등)은 창업지원기관별로 안내 예정

□ **추진방식:** 사회적기업 양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상시적·전문적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제공

○ 창업지원기관은 권역지원기관과 업종(특화)지원기관으로 구분

구분	주요 내용	
권역	- 창업지원기관이 소재한 권역(광역 단위)의 창업팀 육성 - 지역 기반의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균형적인 창업지원 수행	
업종 (특화)	- 국정과제, 사회적경제 정책목표와 연계성을 반영한 산업군 중심의 창업팀 육성 -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 및 시장성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창업지원 수행	
	① 돌봄·사회서비스	복지, 요양 등 사회서비스 중심
	② 친환경·자원순환	재활용, 순환경제, 환경기술 등 ESG 전환 대응
	③ 디지털·지식서비스	플랫폼, 콘텐츠, 데이터, IT서비스 등 4차 산업

○ 창업팀 모집 및 선정, 인큐베이팅은 창업지원기관별로 진행

- 사업신청시 '26년 창업지원기관 중 반드시 1개소만 선택하여야하며, 신청 이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창업지원기관 현황 및 역량표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히 선택하여야 함

※ 창업지원기관 현황은 공고문 15쪽, 창업지원기관별 역량표는 [붙임4] 참조

※ 단, 강원권역 창업지원기관에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팀은 기관이 5월 중 선정될 예정이므로, 진흥원에서 4월 중순 이후 별도 모집공고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본 모집과 중복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창업지원금)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 제공

- (규모) 창업팀 유형별 평균 및 최대 지원금액 상이

①초기창업형	②인증전환형	③재도전형
평균 5,000만원 최대 8,000만원	평균 2,000만원 최대 3,000만원	평균 4,000만원 최대 6,000만원

- (배정) 선정 후 최초 협약금액* 확정('26.5월) → 중간평가('26.7월)를 통해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최초 협약금액: 초기창업형 2,500만원 / 인증전환형 1,000만원 / 재도전형 2,000만원

** 최초 협약금액을 포함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배정

- (교부) 진흥원 교부 일정에 따라 협약금액 내 일정기간 집행예정금액 사전신청(창업팀▶진흥원)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진흥원) → 신청 금액 이체(창업지원기관▶창업팀)

* 주·월·분기 등 교부 일정은 진흥원에서 별도안내 예정이며, 집행예정금액 신청시 필요서류는 본 사업 운영지침(붙임5) 및 지원금 회계처리기준(붙임6)에 따름

- (구성) 비목별 정의 등 세부사항은 【지원금 회계처리기준】 참조

구분		내용
사업 모델 개발비	사업추진비	법인 등기, 지식재산권, 시험·인증,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관련 소요되는비용
	재료비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구입비
	기자재구입비	사업과 관련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 창업팀 유형별 지원금 총액 대비 한도액 설정
	기자재임차료	사업과 관련한 기자재 임차·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외주용역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수행하는 비용
	홍보 및 마케팅비	창업팀의 제품·서비스·사업 홍보 및 광고 비용
운영 경비	일반운영비	사업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창업공간 임차료는 창업팀 지원금의 20% 이내 사용 가능 '인증전환형' 창업팀은 '창업공간 임차료' 편성 및 집행 불가
	여비	창업팀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국내·외 여비 국외여비는 단순 견학, 참관, 시장조사를 위한 출장은 불가
	활동비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기타 소요 경비(월 30만원 한도)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창업지원기관별 강점 및 특성을 반영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담임멘토링) 팀별 담임멘토 배정, 사업 추진에 따른 상시상담 제공
 - (전문멘토링) 업종·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경영지원, 인·지정, 사회적가치지표(SVI) 등 심화멘토링 제공
 - (교육) 사회적기업 진입에 필요한 교육 제공(9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자원연계·사후관리) 지역사회, 외부자원 등을 연계한 네트워킹, 컨설팅, 교육 등 후속지원 제공
- (비즈니스 미팅 및 협업공간) 권역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 캠퍼스 온) 내 회의실 등 활용 연계

2

신청유형 및 자격

□ 신청유형: ①초기창업형, ②인증전환형, ③재도전형으로 구분

유형	지원목적	선정규모
①초기창업형	법인설립, 초기사업화, 사업모델검증 등을 통한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기반 마련	전체 창업팀의 50% 이상
②인증전환형	사회적 목적 중심의 구조 전환을 통한 사회적기업 인증	전체 창업팀의 30% 이내
③재도전형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업모델 재설계를 통한 재도약 지원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전체 창업팀의 20% 이내

※ 1개의 유형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 유형 변경불가

□ 공통 신청자격: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팀으로, 대표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

○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 팀원 변경 가능

□ 유형별 신청자격: 창업팀 대표 기준으로 판단

① 초기창업형

- 공고일('26.3.30.) 기준 미창업 상태*이거나 창업 5년 이내**인 경우

* 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신청가능업력: '21.3.31.~)

② 인증전환형

- 공고일('26.3.30.) 기준 창업 5년 초과* 법인사업자로서, 사회적 목적 중심의 정관 및 조직형태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매출, 고용, 서비스 등 사업실적을 보유한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신청가능업력: ~'21.3.30.)

③ 재도전형

- '11~'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협약종료시점 법인을 설립한 졸업팀 중 폐업·부진 등 실패* 경험을 보유한 자 또는 기업
 - * '25.12.31. 기준 해당 법인을 폐업하였거나, '23~'25년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상 연속적인 당기순손실 또는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 단, '18~'2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재도전창업팀으로 지원받은 자 또는 기업은 신청 불가

□ 신청 및 선정제한

○ 신청한 창업팀 이외의 다른 개인·법인사업자 또는 단체의 임원인 창업팀의 대표

- [예외]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의 임원으로써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반납·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대표자

* 반납·취소일이 '23.3.31. 이후인 경우(해당일자 포함)

○ '11~'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팀의 대표

- [예외] 재도전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창업팀의 대표('18~'2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재도전창업팀 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예외] '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양호' 예비창업팀의 대표(육성사업을 통해 설립한 법인 및 대표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함)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화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예외] 서로 중복되는 협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원활한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①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신청서, 사업화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③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시효 소멸자는 제외
- ④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협약체결 전 완납시 제외
- ⑤ 고용노동부, 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⑥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으로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협약체결 전 제출시 제외
- ⑦ 창업팀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하거나 거부하는 자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참고: 창업팀별 성과목표

- 창업팀 최종평가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상 성과 목표 기준 '양호' 이상의 등급을 달성하여야 하며, '미흡'으로 평가된 창업팀은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평가등급	성과목표
우수	- 협약기간 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완료
양호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요건 충족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완료 * 단,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공고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양호로 평가
미흡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로의 창업에 실패하거나 창업 후 영업 활동 미수행 - 휴·폐업 등 협약기간 내 사업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신청기간: 2026.3.30.(월) ~ 2026.4.17.(금) 17:00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포털(<https://www.seis.or.kr>) 온라인 신청
 - 반드시 창업팀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마감일 임박시 다수의 접속자 발생으로 인해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하는 것을 권고함
 - 법인사업자 보유팀의 경우, 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한 '기업용 공동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는 공고문 [16쪽](#) 참조
- 신청상담
 -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서류 작성방법 및 본 사업 관련 상담 가능
 - 창업지원기관별 사업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사회적기업 포털(<https://www.seis.or.kr>)을 통해 별도 공지
- 신청 유의사항
 - 중복신청에 해당할시 신청무효,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2개 이상의 창업지원기관에 신청할 경우
 - 구성원(대표 포함)이 2개 이상의 창업팀에 소속하여 신청할 경우
 - 오프라인(방문, 우편 등) 신청은 불가능하며, 접수(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서류 일체 수정 및 삭제 불가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유형	서류명
공통	(서식1~3) 참여신청서, 참여개요 및 사업계획서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전원 제출)
	(서식5) 창업팀 협약서
	사업자사실증명서류 (* 대표만 제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이력이 있음)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 (창업이력이 없음)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선택하여 발급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 가능 - 발급에 3시간 내외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시에 유의 - 최종선정 창업팀은 팀원도 해당서류 제출 필요(추후 별도안내 예정) </div>
사업자 보유시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말소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해 인정
인증전환형 신청시	공고일('26.3.30.)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발급시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포함하지 않고 발급
	'25년 매출규모 확인가능 자료 일체 - (예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가결산 재무제표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온라인 신청시 '원클릭 구비서류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매출자료 일부를 불러올 수 있으며, 해당 기능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팀에서 직접 발급 받은 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바로가기 </div>
재도전형 신청시	실패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 (3년 연속 자본잠식 또는 당기순손실) ①'23~'24년 결산 재무제표 및 ②'25년 가결산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원 필수)

※ 서식1~5의 경우, 공고문 [붙임2]의 양식 외 기타 양식 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해당시 제출: 미제출시 해당실적 불인정

- 서류심사 면제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 세부내용 바로가기](#)
-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 특허,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비영리단체(법인) 임원으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유양식 활용) 등

□ 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참여자가 신청 또는 선정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확인된 경우 포함

- 제출서류를 타인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 타인의 사업계획서 등을 모방·표절하는 경우, 팀원 구성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4

선정심사

□ 심사단계: 총 3단계 심사절차 진행

-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 심층면접(교육 포함) → 대면심사 → 최종선정

심층면접 안내

- ※ (진행방식) 팀별 심층 인터뷰 및 토론, 실습, 사업계획 멘토링, 교육 등
- ※ (이수기준) 기관별 4시간 내외로 진행하며, 대표는 전체시간 필수 이수
- ※ (추진일정) 서류심사 발표 직후 창업지원기관에서 정하는 일정에 진행함에 따라 심층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정
- ※ (점수반영) 심층면접 점수는 최종선정 심사 점수에 20% 반영

□ 선정일정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창업팀 모집 및 선정절차는 각 창업지원기관별로 진행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공지하는 일정과 절차 준수 필요
- 관련 안내(서류심사결과, 심층면접·대면심사 안내 등)는 창업지원 기관에서 별도진행 예정

단계	일정	비고	
모집공고	'26.3.30.(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접수	'26.3.30.(월) ~ 4.17.(금) 17:00	사회적기업 포털	
↓			
우선순위 선정	서류심사	'26.4.20.(월) ~ 4.23.(목)	창업지원기관
	↓		
	심층면접	'26.4.24.(금) ~ 4.30.(목)	창업지원기관
↓			
대면심사	'26.5.1.(금) ~ 5.8.(금)	창업지원기관	
↓			
선정공고	'26.5.18.(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평가기준

- 소셜미션, 창업아이템, 실현가능성, 사회적기업 진입의지 및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소셜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구체성 및 중요성 ② 문제상황 및 원인분석의 적절성, 핵심 이해관계자 정의 및 해당 문제에 대한 기존 해결방법 분석 여부 등 이해도
창업아이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창업아이템(제품 또는 서비스)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가능성 ② 창업아이템의 독창성·차별성·경쟁력·혁신성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시장 및 고객층 분석의 타당성 - 조직·인력 구성의 효과성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 일정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의 타당성 ② 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창출구조의 타당성 및 시장진입가능성 - 사업전략의 구체성(경쟁력 확보 방안, 리스크 대응 방안 등)
사회적기업 진입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신청동기 ② (예비)사회적기업 진입계획(사회적목적 유형, 진입시기 등)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제적효과) 사업의 경제적 효과 ② (사회적효과) 창출 가능한 사회적 임팩트

배점	초기창업형	인증전환형	재도전형
소셜미션	20점	10점	15점
창업아이템	25점	25점	25점
실현가능성	25점	25점	25점
사회적기업 진입가능성	20점	30점	25점
기대효과	10점	10점	10점
합계	100점	100점	100점

※ 분야(권역, 특화) 등에 따라 30% 배점 내에서 창업지원기관별 평가기준 조정 가능

□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 본 사업의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 및 선정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해당 특전을 제공함

① ('23년 예비창업팀) '23년 육성사업을 통해 설립한 법인을 유지하고 '23년 대표가 '26년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②③④ (소셜벤처 경연대회 입상팀) 대표가 '26년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함

※ 특전이 중복될 경우 상위 수준의 특전 1가지만 적용함

※ 본 특전은 '26년 창업팀 모집공고에 한함

① '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최종평가 '우수' 또는 '양호')

- 서류심사 면제 (증빙서류: 협약서 사본 또는 선정확인증 사본)

② '23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일반·글로벌 부문 최종 입상자

- 서류심사 면제 (증빙서류: 상장 사본)

③ '23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대학생 부문 최종 입상자

- 서류심사 3점 가점 (증빙서류: 상장 사본)

④ '22~'23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최종 입상자

- 서류심사 1점 가점 (증빙서류: 상장 사본)

□ 대면심사 안내

○ 심사일정, 발표·질의응답시간, 발표자료 제출, 대표자의 발표 여부 등 세부사항은 창업지원기관으로 문의

□ 최종선정 및 사업수행

○ (협약체결) 최종선정 공고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 체결

○ (의무 및 역할)

- 창업팀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지원금 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창업팀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내 사업목표 달성 및 창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창업팀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창업지원기관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창업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사업 종료 후 3년 간 변동사항(인·지정 진입, 매출규모, 고용현황, 폐업 여부 등)에 대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중간·최종평가)** 창업팀은 사전진단 컨설팅 및 중간평가 결과를 통해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 받음
-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평가를 받는 경우 지원중단,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5

유의사항

□ 유의사항

- 협약체결 이후 신청 또는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 되는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지 및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해진 바와 다른 용도로의 지원금 사용, 증빙서류 허위 제출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선정취소, 협약해지,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확인된 경우 포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공고문 및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해당 창업팀에 있음

- 상기 공고사항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 지원내용 및 신청·접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관련

-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기관 [👉 현황 바로가기](#)

□ 사업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육성팀) ☎ 031-697-7741~9

□ 온라인 접수 시스템(사회적기업 포털) 관련

- (사회적기업 포털 고객센터) ☎ 1661-4006
- 고객센터 연결이 어려운 경우 [마이페이지] - [시스템 이용 문의] 게시판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기관(19개소) 현황

구분	연번	권역/분야	창업지원기관명	육성팀	주소	연락처
권역	1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외3	5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200호	02-2135-1589
	2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59	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1182, KT모란빌딩 6층, 소셜캠퍼스 온 경기남부 경기도 양주시 덕계로140, 진산매디프라자 5층, 소셜캠퍼스 온 경기북부	031-894-5121
	3	강원			'26.5월 선정 예정	
	4	인천	아이엔유파트너스 주식회사 외2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12. 미추홀타워 별관 A동 5층 504호	032-835-9683
	5	대전	로컬브릿지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외1	18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370번길 22-1(공간이음)	042-382-9924
	6	세종	가치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외1	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43, 금강시티타워 510호	044-868-8488 044-864-8676
	7	충북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	2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164, 우민타워 3층	043-267-9010
	8	충남	사단법인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외1	2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54, 상문빌딩 2층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방로46번길 45-29. 3층, 소셜캠퍼스 온 충남	041-415-2012
	9	광주	사단법인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외2	18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로62-1, 4층	062-374-8280
	10	전북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외1	2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600, 기업입주동 3층 공동체정책팀	063-711-2132
	11	전남	사단법인 상생나무	18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282, 4층	061-282-9588
	12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외1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65 1층 제주특별자치도 도령로15, 제주관광대 교육관 3층, 소셜캠퍼스 온 제주	070-7770-4331
	13	대구	사단법인 커뮤니티와경제 외1	28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160, 대구스테이션센터 11층, 소셜캠퍼스 온 대구	053-956-5001
	14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28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27, 본부동 301호(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7, 6층, 소셜캠퍼스 온 경북	053-956-5003 054-476-6517
	15	부산	사단법인 사회혁신연구원 외2	28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883, 2층	051-517-0261
	16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일자리연구원	18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62, 2층 소셜비즈니스스퀘어 운영사무국	052-700-6176
	17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22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67, 7층, 소셜캠퍼스 온 경남	055-338-2761
업종 특화	18	돌봄· 사회서비스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외1	30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85, JM플러스 빌딩 8층	070-5057-0990
	19	친환경· 자원순환	시민발전이중협동조합연합회 외1	3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44, 에이동 2층 208호	070-4120-0704 042-933-3400
	20	디지털· 지식서비스	주식회사 뉴키즈인베스트먼트 외1	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2, 826호	010-5923-1690

- ※ 접수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사회적기업 포털 회원가입을 권장함
-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은 창업팀 대표가 하여야하며, 법인사업자 보유팀은 기업 공동인증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사전에 준비하여야함
- ※ '23년 예비창업팀 또는 재도전형 신청팀 중 이미 사회적기업 포털의 계정을 보유한 경우, 기존 아이디 사용을 권장함
- ※ 신청서는 반드시 마감일시 전까지 최종 제출하여야하며, '임시저장' 상태의 신청서는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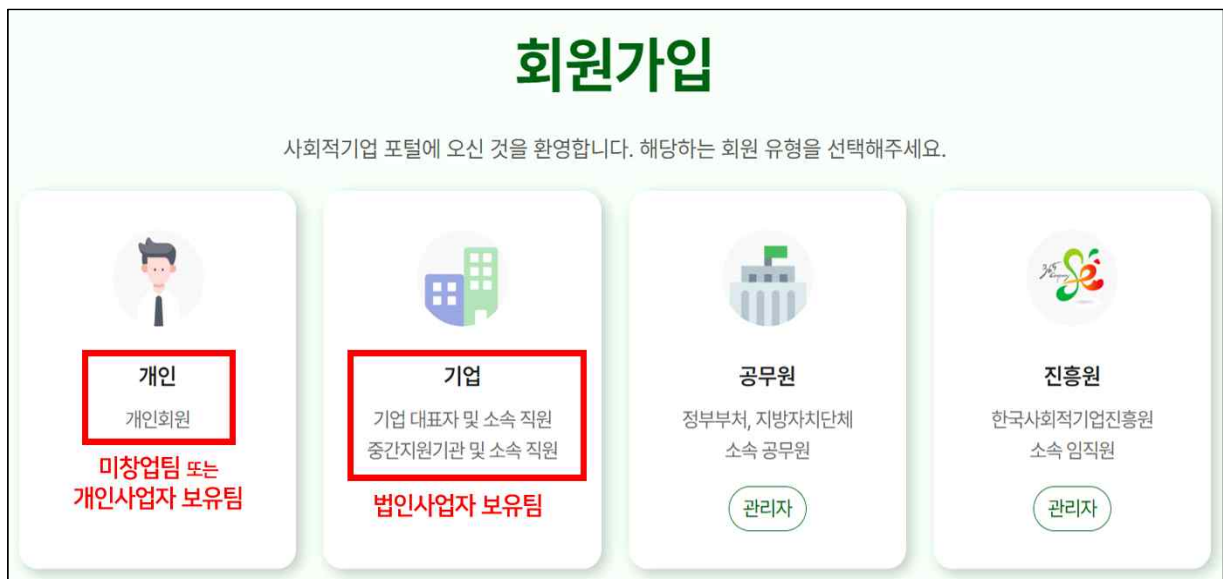
1 | 회원가입

- ① 사회적기업 포털(<https://www.seis.or.kr>) 접속
- ② 화면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선택



③ 회원유형 선택

- (개인회원) 미창업팀 또는 개인사업자 보유팀
- (기업회원) 법인사업자 보유팀



- ④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휴대전화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실명인증)**
 - 반드시 창업팀의 '대표'가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⑤ **회원정보 입력**
 - 법인사업자 보유팀은 기업 공동인증서 인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2 사업신청

- ① **사회적기업 포털 로그인 후 '사업신청'의 '창업지원' 클릭**



- ② **해당하는 창업팀 모집공고를 선택한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③ **[기본정보]탭 및 [구성원정보]탭의 정보 입력**
 - *가 표기되어 있는 항목은 필수입력값으로, 입력하지 않을시 '임시 저장'은 가능하나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④ **[구비서류]탭을 통해 제출서류 첨부**
 - 반드시 공고문 8쪽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시어 신청유형, 창업 상태별 적합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총 용량은 50mb를 넘을 수 없습니다. 용량 초과시 사

업계획서 내 그림, 도표 등의 크기를 조절하시거나 한글파일의 용량 줄이기 설정 등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④-1 '원클릭 구비서류' 가져오기 안내

- 사업자(개인·법인) 보유팀은 해당 기능을 통해 매출 관련 자료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 기업 공동인증서 필요)

※ 발급가능자료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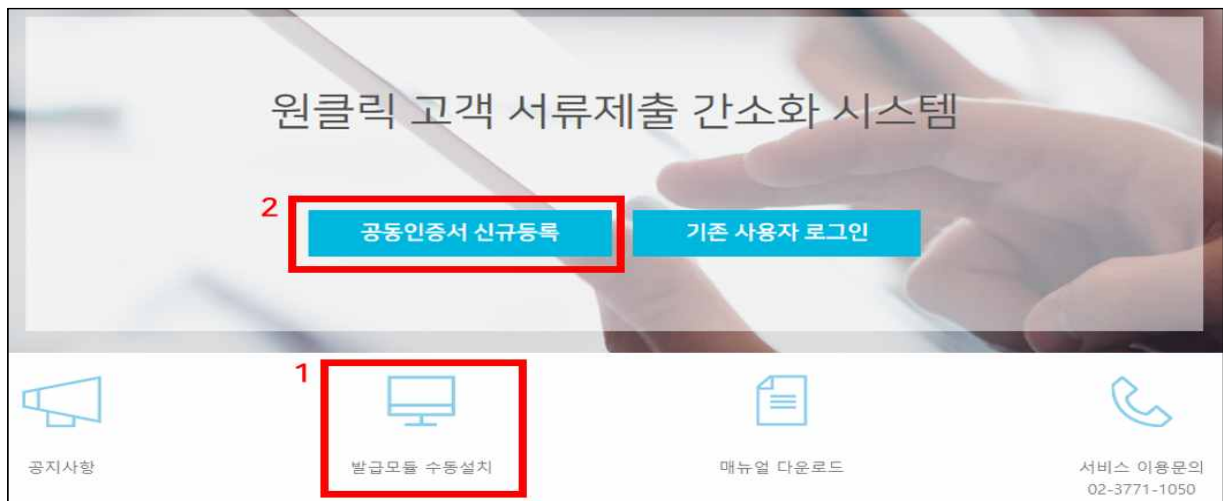
- ▶ 표준재무제표증명('24년)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5년)
- ▶ 부가세신고내역('25년)
- ▶ 거래처별 매입·매출전자세금계산서('25년)

- 해당 기능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구비서류] 탭의 '기타(보완서류)'란을 활용하여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④-2 '원클릭 구비서류' 가져오기 사용방법

- <1. 원클릭 구비서류 제출 사이트 열기>를 클릭합니다.

- 발급 모듈을 설치한 후 '공동인증서 신규등록'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합니다.
- <2. 원클릭 구비서류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연동가능한 상태의 매출 관련자료가 자동으로 첨부됩니다.

⑤ [구비서류]탭 하단의 '제출' 클릭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을 완료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신청이 완료됩니다.
- 작성 도중 '임시저장'이 가능하오니 해당 버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확인

① 신청서 확인

- (경로) 메인화면의 우측의 [마이페이지] - [나의 신청현황] - [신청목록]

② 신청서 수정 및 삭제

-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신청서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하며, 마감 전 까지 제출하여야 본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③ 신청서 제출

- '제출'버튼을 클릭하면 상태값이 '신청'으로 변경됩니다.
- 창업지원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 단,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았거나 보완제출을 완료한 경우 '신청취소'할 수 없습니다.

④ 창업지원기관의 신청서 접수

- 창업지원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태값이 '접수'로 변경됩니다.
☞ 접수 후에는 '신청취소'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직접 창업지원기관에 연락하여 '접수취소'를 요청해야하며, 마감 전까지 제출하여야 본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⑤ 창업지원기관의 보완요청

- 창업지원기관에서는 창업팀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신청서에 등록된 대표의 휴대번호로 문자가 전송됩니다.
- [마이페이지]-[나의 신청내역]에서 '보완요청' 상태의 신청서를 클릭하면 [보완요청]탭을 통해 요청내용 및 보완완료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팀 신청				
기본정보	구성원정보	구비서류	보완요청	
• 보완요청 (총 2건)				
보완요청 일시	보완요청자	보완요청내용	보완완료일	보완제출일시

- 보완 후 [구비서류]탭 하단의 '제출'을 눌러주셔야 보완사항이 창업지원기관으로 전송되며 상태값이 '보완제출'로 변경됩니다.